


지휘서신 제1호: 지휘관의 Open Door 원칙

1. 관련근거

- 가. 美육군규정 600-20 육군지휘규칙 (2020. 7. 24.)
- 나. 美제2보병사단 지휘서신 제8호 (2023. 5. 18.) 비위사실 처리 위임불가 원칙

2.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지휘관이 부대의 기강, 사기 및 작전수행에 관한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. 위 원칙에 의거하여, 제2보병사단/한미 연합사단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기타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공·사의 문제에 관하여 지휘관을 대면하여 관련사실, 우려, 문제 등을 상의할 수 있다.
3. 대부분의 문제 상황은 각 해당 부대(서)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. 따라서 군인 및 군무원은 소속 부대(서)의 지휘계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먼저 시도한 후 지휘관의 Open Door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. 각 부대(서)의 지휘계통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휘관과 직접 상의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직접 상의할 수 있다.
4. 지휘관을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지휘계통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. 통상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은 소속 지휘계통을 통하여 Open Door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나, 지휘계통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휘관, 참모장, 사단 주임원사 또는 비서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5. 지휘관 대면을 위한 요청에는 문제 상황의 개요 및 대면 일정을 정함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포함하여야 한다. 진행중인 수사 또는 형사·징계 기타 불이익 조치의 대상과 연관된 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에 대면하도록 한다.
6.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Equal Opportunity Office 로 하며 담당자는 사단 Equal Opportunity Program Manager (DSN 756-7342) 및 Senior Equal Opportunity Advisor (DSN 756-6375)로 한다. 끝.


WILLIAM D. TAYLOR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

